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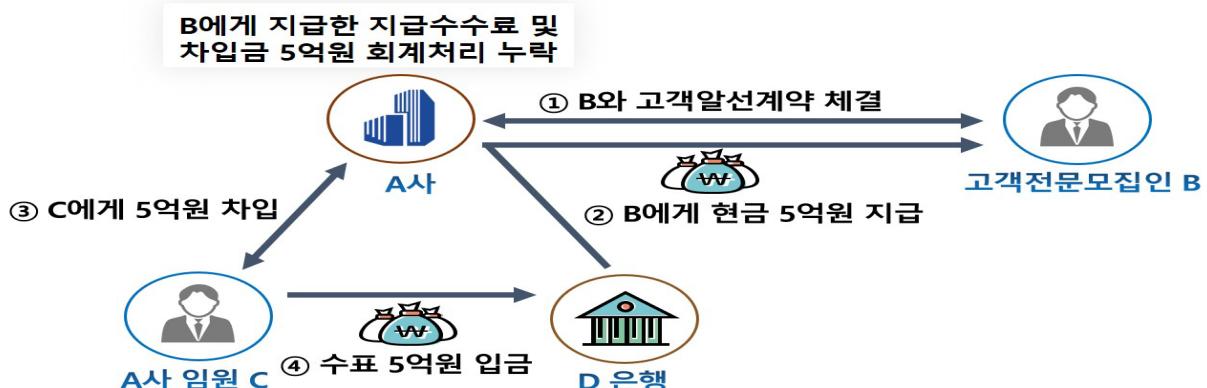
## 감리지적 사례 FSS/2008-27 :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지급수수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5.1.1.~'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5.12.31. 고객전문모집인 B와 고객알선계약 체결하고 현금 5억원을 지급하였다. 회사는 ’x5.12.31. 회사 임원 C씨가 가지고 있던 수표 5억원을 빌려 D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지급수수료(5억원) 및 차입금(5억원)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또한 회사는 상기 차입금을 x6.1.4. D은행 계좌에서 C씨의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 A사 x5년 회계처리(지급수수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지급수수료 회계처리를 누락하였고, 일시적인 차입으로 현금 등의 외부유출을 숨겼으며, 동 차입금의 차입·상환 시에도 일체의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② 회사는 'x5년말 고객전문모집인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수수료 5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할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이 영업손실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 수수료 회계처리를 누락하기 위해 일시적인 차입으로 현금 등의 외부유출을 숨겼으며, 동 차입금의 차입·상환시에도 일체의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 회사는 'x2년, 'x3년, 'x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상기 회계처리 반영시 'x5년 역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존재(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A사가 'x5년 지급 수수료 및 차입금 5억원 과소 계상, 'x6년 차입금 상환 관련 이익 등 5억원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시사점**

① 회사는 악화된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인식요건을 충족한 비용 및 부채 등을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감사인은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론을 감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절차 수행시에는 신뢰성이 높은 외부증빙(금융기관 조회서, 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기관 조회서 전수 검사, 보고기간말 이후 일정기간 출금 내역 확인, 주요 수수료 계정을 포함한 비용 계정검토 등 감사인으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대상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등 상장폐지요건에 근접한 경우에는 동 감사절차를 확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